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영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2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김영옥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철,
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 석, 박성연, 서상열,
신복자, 유정인, 이봉준,
이상욱, 이성배, 이종환,
장태용, 최민규, 최윤희,
허 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약칭:발달장애인법) 제2조제2호에는 발달장애인 “보호자”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.
- 동법 제34조제2항제8호에는 동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의 감독에 대한 업무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임하고 있음.
- 「발달장애인법」 제2조제2호라목은 나목(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)과 다목(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「민법」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)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대상을 “보호자”로 정의하고 있음.
- 따라서 「발달장애인법」 제34조제2항제8호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감독 대상은 「발달장애인법」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한 보호자로 한정된 것으로 보임.

- 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제3항제8호는 “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감독”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「발달장애인법」 제2조제2호에서 정의된 발달장애인의 “보호자” 전체를 감독 대상으로 확대해석 될 여지가 있음.
- 이에 “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감독”의 문구를 “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”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, 발달장애지원센터 감독업무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함.
- 현재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, 노인종합복지관, 장애인복지관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, 소규모노인복지센터, 장애인주간보호시설, 노숙인이용시설 등 7종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.
-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본래의 설립 목적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으나 이용자 대다수가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임에 따라 평생교육과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복지시설과 평생교육기관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.
-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센터의 운영 개선과 서비스의 질 제고,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, 예산 등의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발달장애지원센터 업무의 “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감독”의 문구를 “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”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, 발달장애지원센터 감독업무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. (안 제10조제3항제8호).
- 나.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센터의 감독 · 지원 등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. (안 제12조 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8호 중 “발달장애인”를 “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정하는 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센터의 감독·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 · ② (생략)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7. (생략) 8. <u>발달장애인</u> 보호자에 대한 감독 9. ~ 12. (생략) ④ · ⑤ (생략)	제10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-</u> ----- 9. ~ 12. (현행과 같음)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지도·감독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2조(지도·감독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시장은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정하는 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센터의 감독·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.</u>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12조(지도·감독)제3항	△	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 정기평가 체계 마련 및 평가수행 비용이 발생하나 현재로서는 평가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정확한 산출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함 ⇒ 다만, 서울시 관련부서(복지실 장애인복지과) 문의결과 기존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대강을 추정할 시 연평균 약 80,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안 제12조(지도·감독)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 정기평가 수행 비용은 서울시 관련부서(복지실 장애인복지과) 문의결과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소요비용 추정이 곤란함
- [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] 다만, 복지부서의 서울형 평가는 서울시복지재단 등에서 수행하고 있어 기존 유사 규모¹⁾의 평가수행 비용을 준용하여 대강을 추정할 시 연평균 80,000천원 수준 소요될 것으로 보임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주 병 준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☎ 02-2180-7953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1) [기시행 유사사례] 2025년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(26개소 평가, 약 81,000천원 소요)
⇒ 본 규정에 의한 평가센터 개소와 유사하여 이를 준용할 시 소요비용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